

# 현장실습교과목 운영 내규



## 한국항공대학교

## 개정 기록표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
| 1  | 2020.3.9   |          | 16 |      |          |
| 2  | 2020.11.30 |          | 17 |      |          |
| 3  |            |          | 18 |      |          |
| 4  |            |          | 19 |      |          |
| 5  |            |          | 20 |      |          |
| 6  |            |          | 21 |      |          |
| 7  |            |          | 22 |      |          |
| 8  |            |          | 23 |      |          |
| 9  |            |          | 24 |      |          |
| 10 |            |          | 25 |      |          |
| 11 |            |          | 26 |      |          |
| 12 |            |          | 27 |      |          |
| 13 |            |          | 28 |      |          |
| 14 |            |          | 29 |      |          |
| 15 |            |          | 30 |      |          |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2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11조 제3항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부서)**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이하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개정 2020.3.9>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2. 학부(과) 개설 전공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지원
3. 현장실습 참여 업체 발굴 및 관리
4. 현장실습 학생 상담 및 지도

**제4조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 ①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이 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9>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9>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정책 심의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타)**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제7조 (편성)** 현장실습은 4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수)**

- ① 이 내규에 의한 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을 합하여 재학 중 최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 ② 현장실습을 이수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기관의 동의와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기관 및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1.30>
- ③ 현장실습기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질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현장실습기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신설 2020.11.30>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때 또는 실습종료 전 학점인정 평가가 필요할 때
- ④ 장기 현장실습은 1회 이내, 단기 현장실습은 2회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의 개설)**

- ① 현장실습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부(과)에서 개설한다.<개정 2020.3.9>
- ②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수업계획
  2. 수강신청 계획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4. 교과목 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5. 평가 방식
  6. 기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사항
- ③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장체험연수 등의 현장실습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신청자격)**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3.9>
2.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11조 (신청 및 선발)**

- ①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 및 학부(과)장은 우리 대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개정 2020.3.9>
- ③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센터장 및 해당 학부(과)장, 교과목 담당교수가 현장실습기관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3.9>
- ④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제11조의 2 (수강신청)**

- ① 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 기간에는 현장실습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사이버 강좌 및 원격 강좌는 기준학점 범위 이내에서 수강 가능하다.
- ③ 현장실습은 본교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한다.<개정 2020.3.9>

**제12조 (실습지도)** 센터장 및 해당 학부(과)장 혹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실습생의 작업 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13조 (평가와 학점인정)**

- ① 현장실습 과목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실습생의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기관의 출근부 및 기업평가표, 순회지도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개정 2020.3.9>
- ②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일반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20.11.30>
- ③ 현장실습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이수 NP(No Pass)로 평가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④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3. 9., 개정 2020.11.30>

**제14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대학과 무관하게 현장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실습한 경우
2.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3. 학부(과)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제 3 장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제15조**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3.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제16조** (협약사항)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실습수당 및 후생복지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실습 주체(실습생, 실습기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실습지원비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4 장 실습생의 의무

**제18조** (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학부(과)로 제출한다.<개정 2020.3.9>
2. 우리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관련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 조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20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운영부서 세부지침, 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사항은 현

장실습 운영규정 및 매뉴얼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내규 제정일 이전 현장실습은 기존 인턴십 관리지침에 따른다.
3. (양식) 현장실습 관련 제반 양식은 본 내규의 붙임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수정사용 가능함.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개정 2020.11.30.>

| 현장실습 구분 | 개설 주체    | 편성 상세 |                 |      |              | 이수 구분 | 비고 |
|---------|----------|-------|-----------------|------|--------------|-------|----|
|         |          | 과정    | 교과목명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    |
| 전공 현장실습 | 각 학부(과)  | 학기제   | 학과(전공)*장기현장실습   | 15   | 12주(480시간)이상 | 전공 선택 |    |
|         |          | 계절제   | 학과(전공)*단기현장실습 1 | 3    | 4주(160시간)이상  |       |    |
|         |          |       | 학과(전공)*단기현장실습 2 | 3    | 4주(160시간)이상  |       |    |
| 일반 현장실습 | 대학일자리 센터 | 학기제   | 장기현장실습          | 15   | 12주(480시간)이상 | 일반 선택 |    |
|         |          | 계절제   | 일반단기현장실습 1      | 3    | 4주(160시간)이상  |       |    |
|         |          |       | 일반단기현장실습 2      | 3    | 4주(160시간)이상  |       |    |

1. 상기표에 명시되지 않은 ICT학점연계인턴십 교과목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ICT 관련 학부(과) 또는 부·복수전공자만 이수 가능하며 기존의 편성기준을 따를 수 있다.(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2. 그 외 신규 개설되는 현장실습 교과목은 본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실습기간 1주 단위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과(전공)\* : 전공현장실습명의 학과(전공)명은 학부(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 : 물류장기현장실습 / 항공우주기계장기현장실습 / 항공재료단기현장실습 등)

【양 식 1】 ~ 【양 식 18-2】 <삭제 2020.3.9>